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주)

2. 제재조치일 : 2026. 6.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30백만원) 부과
임원 (3명)	주의적경고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사모단독펀드 해산 회피 목적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의 총수가 1인인 투자회사의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주)(이하 ‘회사’)는 2022.4.28. ㉠펀드를 설립하면서 동 회사형 펀드의 주주가 1인(GRE 신탁형 재간접펀드)이 되어 해산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재간접펀드를 2개(㉡펀드, ㉢펀드)로 분할·설정함으로써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설정일(2022.4.27.), 투자자(A, B), 투자대상(㉡펀드의 보통주) 및 운용역(甲)이 모두 동일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202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2)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만을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펀드 및 ㉡펀드를 설정·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관계인 A간 아래와 같이 이해가 상충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A가 ㉠펀드 및 ㉡펀드가 발행(예정)한 수익증권 130억원*을 총액인수한 것에 대해서 회사는 ㉠펀드 및 ㉡펀드 재산에서 A에게 인수 수수료 15억원을 지급하였는데,

* 실제로는 105억원만 인수

위 수수료는 일반적 거래조건에 비추어 과다하였으므로 ㉠펀드 및 ㉡펀드에 유리하지 않은 거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나. 주의사항

(1) 이해관계인 거래 시 신탁업자 통보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8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게 유리한 거래는 가능하나,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3.5.17. ㉠펀드를 설정·운용함에 있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게 유리한 거래를 다음과 같이 대주주 C와 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C가 ㉠펀드에 10억원의 투자를 중개·주선한 것에 대해서 회사는 ㉠펀드 재산으로 C에게 수수료 2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수수료는 일반적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게 유리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였으나 회사는 그 내용을 ㉠펀드 재산을 보관하는 D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84조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